

知的所有權 保護의 國際動向과 우리의 政策課題

I. 머리말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先進國間의 對立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最近 國內外 狀況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知的所有權에 對한 政策方向을 再定立해야할 時點에 와 있다.

本稿에서는 知的所有權 保護를 爲한 國際動向을 간략히 考察하고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할 研究課題 내지 政策課題를 提示하는데 目的이 있다.

II. 知的所有權保護에 對한 認識의 提高

최근 知的所有權 保護에 對한 問題가 國內의 問題로서 또는 國際의 問題로서 중요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國內의 으로는 우리의 産業과 技術의 發展 및 이에 따른 對外貿易規模의 擴大로 우리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積極의 면에서는 知的所有權 保護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다른 측면에서는 他人의 知的所有權과 충돌을 避해야할 不可避性이 增大되고 있다.

과거에 비교적 값이싼 勞動集約的인 商品을 生産販賣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知的所有權과 관계없는 品目이거나 그 保護期間이 끝난 商品들이었다. 그리고 世界市場에서 市場規模와 支配力이 극히 미미하였을 때는 우리 商品이 外國의 特許나 商標등 知的所有權과 다소 충돌이 되더라도 크게 問題를 삼지않고 지나갈수 있었다. 한편 對外的으로 볼때 우리 輸出은 後發開途國들의 추격으로 勞動集約的인 商品의 價格競爭에 있어서 是 競爭力과 市場占有率을 잃어가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高附加價値의 技術集約的인 商品을 開發하여 輸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는 살아있는 特許權, 有名商標와 의 摩擦을 초래할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 또한 國內外的으로 競爭에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技術

을 開發하고 또한 이를 特許나 實用新案 또는 意匠으로 登錄하여 相當한 期間 獨占權을 부여받아 同一技術에 對한 模倣과 競爭을 排除하여야 한다. 이렇게 開發된 技術을 財産權化하여 技術開發에 對한 投資와 새로운 商品의 企業化를 위한 冒險的인 投資의 資本을 回收하지 않으면 계속 企業으로 發展할수 없다.

企業은 自己商品에 對한 꾸준한 技術의 發展, 品質의 改善, アフ터서비스 向上등으로 自己商標에 對한 消費者的 信用을 쌓음으로서 계속 企業으로서의 市場을 構築하게 되고 商標만 의 輸出(使用權設定)이 可能하게 되어 企業의 重要 所得源이 되는 資産이 된다.

한편 우리의 가장크고 重要한 貿易相對國인 美國의 경우 傳統의인 製造業은 相當한 部門에 있어 國際競爭力을 喪失해가고 있어서 農産物, 尖端技術産業, 서비스 産業, 知的所有權部門등 競爭力이 優位에 있는 部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包含 그들의 主要 貿易相對國에 對해 強力한 市場開放을 要求하고 있다.

美國의 尙大한 市場力이 美國市場을 노리는 世界各國企業의 經濟規模를 유지케하는 原動力이 되어 있다. 따라서 美國의 요청은 市場이란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으로 相當한 說得力을 발휘하게 된다.

知的所有權은 文化暢達을 위한 著作權이나 産業發展을 위한 工業所有權이나 랄것없이 個人 또는 企業의 財産權으로서의 價値와 그 比重이 점차 增大되고 있는 것은 分明한 事實이다. 知的所有權의 保護는 西洋에 있어서는 200年 以上の 傳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財産權보다 가장먼저 國際的인 保護裝置가 發展되어 왔다. 앞으로도 國際的인 保護制度의 發展이 계속 追求될 展望이다.

先進國으로 가는 여러가지 條件中에서 知的所有權 保護의 發展은 빼놓을수 없는 것이며, 이 分野에 對한



朴 弘 植

〈特許廳 次長〉

目 次

- I. 머리 말
- II. 知的所有權保護에 대한 認識의 提高
- III. 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最近의 國際動向
- IV. 우리의 政策課題
- V. 맺 는 말

<이번號에 全載>

學問의 研究는 知的所有權發展을 위한 수 많은 政策課題를 푸는데 큰 礎石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文化 및 産業發展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發足한 知的所有權學會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

III. 知的所有權 保護를 爲한 最近의 國際動向

1) 國際保護 強化의 促進

오늘날 國際間的 資本의 移動 (從前에 資本移動은 先進國에서 開途國으로의 一方통행이었으나 최근에는 逆流現狀도 일어나고 있다) 技術移轉, 商品 및 서비스 交易 등으로 國際間的 經濟交流가 擴大되고 있고, 특히 交通 및 情報通信技術의 발달로 技術開發에 관한 産業情報 내지는 創作物이 신속하게 外國에 傳達되며, 開途國의 經濟力과 技術의 向上으로 模倣의 程度가 깊고 빠르게 이루어 진다. 오늘날 國際間的 經濟交流에 있어 知的所有權이 附隨되는 것이 通례로 되어있다. 技術移轉은 물론 投資에 있어서도 技術, Know How, 商標 등이 수반되며, 高度의 技術商品의 交易에는 特許技術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 事例로 되어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知的所有權의 保護對象, 方法 및 程度의 差異로 어떤 나라에서 保護되는 權利가 어떤 나라에선 保護되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들間에 經濟交流에 障礙를 招來한다는 것은 당연한 論理이다.

이같은 經濟的인 狀況이 最近에 있어 國際間的 知的所有權 保護의 強化를 위한 움직임을 促進시키고 있다.

2) 파리 協約의 苦惱

—파리 協約의 改正과 特許法 調和를 위한 條約의 推進—

(1) 파리 協約改正의 難航

파리 協約은 모든 産業分野에 있어서 知的所有權을 包括하고 있기 때문에 文字 그대로 工業所有權 保護의 大憲章이라 할수 있다. 파리 協約은 各同盟國이 준수하여야 할 몇가지 原則 (內國民 待遇의 原則, 優先權 制度의 認定等)을 定해 놓고 있는바, 이들 條項은 工業所有權의 國際的 保護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條項이다. 그러나 同盟各國이 준수할 範圍는 制限되어 있으며 相當한 範圍의 自由가 各國의 利益이나 選好에 따라 立法할수 있도록 주어져있다.

예컨대 同盟各國은

① 特許要件 判斷基準設定에 완전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種類의 物質이나 物件을 特許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다.

② 工業所有權 許容에 있어 審査基準을 定해놓고 事前審査를 하든(審査主義) 하지 않든(無審査主義) 自由이다.

③ 先出願者에게 特許를 해주든지 先發明者에게 特許를 해주든지도 自由이다.

④ 工業所有權의 期間의 長短도 자유롭게 定할수 있다.

⑤ 商標登錄의 要件으로 先使用 또는 先登錄 어느 것으로 定하더라도 無妨하다.

⑥ 기타 出願·登錄·審判 등에 관한 節次 및 行政事項 등은 各國에 一任되어 있다.

이와같은 融通性은 물론 많은 國家들을 同盟으로 끌어들이는데 공헌을 한 것이지만 工業所有權制度의 調和와 保護增進이란 본래의 條約의 目的과는 거리가 相當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차적인 發展을 目標로 同條約은 끊임없는 改正을 前提로 하고 있다.

1883年 파리 協約이 締結된 以後 6차례에 걸쳐 修正이 있었다. (①1900年 브뤼셀에서 ②1911年 워싱턴에

서 ③ 1925年 헤이그에서 ④ 1934年 룬돈에서 ⑤ 1958年 리스본에서 ⑥ 1967年 스톡홀름에서) 그리고 1980年 7차 改正案이 外交會議에 提出되어 아직 懸案問題로 남아있다. 파리 同盟이 1883年 最初로 成立할때 11個國이 署名하였고, 그후 署名國은 每年增加 現在 97個國이 되었으며 開途國이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開途國의 發言權이 増大됨에 따라 開途國의 意見을 反映한 特別報告書가 1974年 UN專門機關에 依해 作成되었다. 同報告書는 特許는 先進國 國民에 依해 獨寡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開途國에서 外國人에게 부여한 特許의 90%以上이 生産에는 活用되지 않고 製品으로서 輸入되고 있는데 不過함으로 特許制度는 開發途上國에는 오히려 不利益을 주고 주로 先進國의 利益을 위해 利用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先進國 中心의 現行 特許制度에 對한 不滿과 이에 대한 是正을 要求하고 나선것이 파리協約 7次改正의 추진이다. 開發途上國 구름은 現在의 特許制度는 個人的 權利에 지나치게 倚重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公共의 利益을 중시하고, 個人的 權利는 義務를 수반할 것 (不實施 制裁規定 強化: 輸入은 實施에서 제외, 強制實施權 발동을 爲한 要件으로서 不實施期間의 단축, 排他的 強制實施權 設定許容)과 開發途上國에 대해서는 特惠대우를 부여할 것 (料金の 減免, 優先權期間의 延長 技術援助規定 채택등)을 提案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協約 改正案은 그간 7차에 걸친 外交會議을 거듭하면서도 先後進國間에 심한 意見差異로 現在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間에는 파리協約 改正案과는 逆으로 知的所有權 保護強化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파리協約 改正案은 가까운 將來에 타결될 展望은 희박하다.

(2) 特許法 調和를 爲한 條約의 推進

世界各國의 特許法上 差異點을 解消하고 調和를 도모하기 위한 條約案 作成을 위한 專門家會議가 WIPO 主催로 昨年에 이어 今年에 두번째로 開催되었다.

今年會議의 公式名稱은 『發明保護를 위한 法の 어떤 條項의 調和를 위한 WIPO 專門家委員會: 二次會議』 (WIP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provisions in Laws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Second Session)

파리協約 改正案의 교착 상태를 意識한 탓인지 迂回的인 表現을 使用하고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世界特許法 統一을 위한 條約案 作成 專門家會議다.

비록 統一을 기하고자하는 對象은 各國 特許法의 一

部 內容이지만 調和를 위한 論議의 對象이 重要하고 各國間의 심한 差異點이 있는 條項만 對象으로하고 있으므로 全體의 調和를 追求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協約 改正을 위한 外交會議가 開途國의 입김을 反映한 公益을 위한 特許權의 制限에 主眼點이 있다면 금번 統一 條約案 作成會議는 發明保護를 위한 特許法의 條文들의 調和를 通하여 特許權取得의 便宜와 權利保護의 強化를 期하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特許法 統一을 위한 새로운 條約은 現파리協約 19條에 依한 特別協定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同條約이 파리協約에 規定하지 않은 것을 規定하는 경우에도 파리協約의 同盟國 國民의 權限을 制限하는 것은 아니다.

WIPO設立 目的 수행을 위한 우선적인 任務의 하나가 知的所有權의 效率의 保護를 促進하기 위해 이 分野에 있어서 各國의 國內法의 調和를 기하는 方案을 發展시키는 것이며 (WIPO設立 條約 第4조 1號) 또한 知的所有權의 保護增進을 위한 國際協約締結을 促進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조 제iv호)

世界特許法의 調和를 위한 WIPO의 노력은 그 設立 目的에 따른 任務를 遂行하는 것이고 또한 知的所有權 保護強化가 모든 先進國이 바라는 바다.

그러나 開發途上國 中心의 파리協約改正案이 現在 교착 狀態에 있는 狀況하에서 先進國中心의 特許法 統一條約案이 앞으로의 外交會議에서 겪을 難航은 불을보듯 明確하다.

同條約案에 對한 具體的인 論議를 할 機會가 따로있을 줄이나 우선 調和 對象으로 설정한 項目만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一. 二次會議에서 討論을 거친 것으로서는

- ① 請求範圍의 記載方式
- ② 發明의 單一性
- ③ 製法特許의 保護擴大
- ④ 出願의 先行技術로서의 效力
- ⑤ 發明의 新規性 擬制(Grace period)
- ⑥ 出願日 賦與要件
- ⑦ 發明者 指定 記載要件등이며

앞으로 專門家會議(86年 11月中 1次, 87年中 2次 計劃)에서 討論될 事項으로 定한것은

- ① 特許를 받을수 없는 發明
- ② 特許請求範圍의 解釋
- ③ 特許權의 存續期間
- ④ 先願主義와 先發明主義
- ⑤ 特許權의 內容등이다.

지금까지의 專門家會議에서는 形式的要件과 特許性

에 관한 技術的 問題가 검토되었으나 앞으로는 特許의 對象 및 特許權의 權利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의 하게 될 것이다.

파리協約 改正 問題와 관련 特許法 調和를 위한 會議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先發開途國으로서 어떤 立場에서 對處해 나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政策判斷이 必要하다.

3) 美國의 知的所有權 保護 動向

美國은 傳統的인 知的所有權 保護法인 特許法, 商標法, 著作權法外 通商과 關聯 지난 수년간 一連의 立法措置를 취하고 또한 今年 4월에 知的所有權保護 強化法案을 國會에 제출中에 있다.

知的所有權의 不充分한 保護가 自由公正貿易에 重大한 障礙要因으로 보고 장애제거를 위한 모든 조치를 強力히 推進하고 있다.

商標偽造防止法(1984), 84通商關稅法 301條, 國際貿易投資法, 高度技術商標法, GSP延長法, 美關稅法 第337條등에서 外國에서의 知的所有權 保護를 強調하고 이에대한 效果的인 對應措置를 강구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하고 있다.

美國 行政府는 外國에서의 知的所有權 保護實態를 調查하기 위한 特別調查班을 설치하였고 이 調查班의 報告書를 土臺로 지난 4月 特別聲明을 발표하였다. 이 聲明書는 美行政府의 知的所有權 保護에 對한 단호한 決意를 表明하고 있다.

美國의 政治 및 經濟的인 位置를 감안해 볼때 앞으로의 파리協約 改正會議, 特許法 調和에 관련 會議, GATT의 New Round등 多者間會議에서 뿐만 아니라 兩國間 貿易協商에 있어서도 知的所有權 保護 強化의 波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4月 3日 美國政府가 발표한 『美國國民의 海外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特別聲明』의 要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要 點>

海外에서 知的所有權에 對한 잘못된 認識과 부적절한 保護로 因한 侵害行爲는 世界貿易과 技術開發에 심각한 障礙要因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是正하기 위해 美國은 國內 또는 國際적으로 (多者間 및 兩者間) 모든 措置를 講求할 것이라고 聲明하고 있음.

<海外에서 知的所有權保護의 實態把握>

◎ 어떤 나라들은 知的所有權을 公共然히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政府政策을 통해 外國技術 및 創作品의 盜用을 권장하고 있다.

◎ 어떤 나라들은 製法特許(Process Patent)만 許

容하고 物質自體의 特許(Product Patent)는 許容하고 있지 않고 있다. 特히 化學物質, 醫藥 및 生物工學(Biotechnology)이 保護되지 않고 있다.

◎ 製法만의 特許는 새로운 物質을 創製하는데 寄與하기는 커녕 發明된 物質을 만드는데 非能率的인 方法만 研究하도록 장려하는 結果가 된다.

◎ 많은 나라들이 外國의 著作物은 保護하지도 않고 있고, 著作物의 一部만 保護하고 있어 새로이 發展되고 있는 著作物(例; 컴퓨터 소프트웨어, 通信衛星等)은 保護對象으로 하고있지 않다.

◎ 知的所有權 侵害防止를 爲한 法은 있어도 海賊行爲는 盛行하고 있고 政府는 이를 效果的으로 대처할 意志가 없다.

◎ 國際條約상의 知的所有權 保護基準은 너무 弱하게 되어 있다.

· 特히 特許部門에 있어 어떤 部類 예컨대 化學物質, 醫藥, 生物工學等에 있어 全品目에 대해 特許保護를 하지 않더라도 條約에 위배되지 않는다.

· 強制實施權制度로 適切한 補償없이 特許權을 실시 하더라도 無妨하다.

· 새로이 出現되는 技術(半導體집,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保護는 包含하고 있지 않다.

· 많은 나라들은 파리協約을 改正 現行보다 오히려 더 保護基準을 弱화시키려 하고 있다.

<保護對象의 知的所有權形態>

特許權, 商標權, 意匠權, 商品의 去來상의 表識(Trade dress) 營業秘訣(Trade-secret) 및 新技術出現에 따른 새로운 形態

<美行政府의 推進計劃>

多 國 間

◎ GATT의 新多者間 協商에 있어 知的所有權의 不適切한 保護로 因한 貿易沮害防止를 위한 多者間 貿易協定 締結

◎ 嚮矣化 되고있는 偽造問題 解決을 위해 GATT의 偽造防止 規約(Anti-Counterfeiting code)의 採擇 및 WIPO를 통한 既存基準의 強化

◎ 現行 條約과 協定下의 保護基準의 잠식 反對(筆者註; 파리協約 改正 움직임을 지칭한듯)

◎ 多國間 또는 地域特許廳設立 構想에 對한 討議提議

兩 國 間

◎ 既存協定 條約상의 義務를 履行토록 최대한 努力; 美國 當事者 權利侵害 抗議 提起

◎ 적절한 保護의 확보를 위해 美國의 貿易 기타 關

係法令의 총동원 活用

◎ 相對國의 效果의인 조치의 發展을 促求시키기 위해 兩者間協商의 적극추진(筆者註: 現在 韓國, 臺灣, 브라질, 인도네시아등 추진중)

◎ 知的所有權의 專門知識 向上을 爲한 Seminar, 技術協力 및 訓練의 擴大實施

國內措置

◎ 「1986 知的所有權 保護 向上法」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rovement Act of 1986) 通過努力

4) GATT와 WIPO의 偽造商品에 대한 立場

偽造商品의 交易을 效果의으로 防止하는 조치를 貿易을 관장하는 GATT에서 할것인가 知的所有權을 관장하는 WIPO에서 할것인가에 대한 管轄權 논쟁이 있는 가운데 자기 獨自의으로 方案을 강구하고 있다.

GATT에서는 78.7 美國의 發議로 GATT TOKYO Round에서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共同聲明을 발표하고, 84.11 第40次 GATT 總會에서 先進國의 요청에 따라 偽造商品 問題 검토를 위한 專門家 Group을 構成키로 결의했다.

今年 2月 New Round 準備委員會에서도 이 問題에 대한 GATT 및 WIPO의 管轄權 및 New Round 議題 채택에 대한 先進國과 開途國間에 意見對立이 되풀이 되었다. 先進國에서는 偽造商品의 交易을 效果의으로 防止하는 것은 自由公正貿易을 目標로하는 GATT 精神에 맞는 것이라하고, 開途國에서는 그 같은 偽造商品 交易防止를 위한 새로운 協定은 또다른 貿易障壁을 쌓는 것이고, 知的所有權 문제는 WIPO가 專擔하고 있으므로 偽造商品交易問題도 WIPO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論理이다.

79年 7月 美國과 EC가 協議 GATT 總會에 提出할 偽造商品交易에 관한 國際協定案을 作成한바 있고 앞으로 New Round에서 제기될 條約案도 이와 大同小異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WIPO에서도 금년 5月 제네바에서 偽造行爲防止에 관한 專門家會議를 開催 各國法에 具體化하도록 권고할 Model 規定을 검토한바 있다.

GATT에서는 條約締結을 推進하는데 反에 WIPO에서는 各國의 國內法에 이를 反映하도록 勸告案을 作成하는등 偽造防止에 대한 強度에 差異를 보이고 있다.

IV. 우리의 政策課題

1) 政策方向의 設定

知的所有權의 保護程度와 方法은 各國의 文化와 產

業의 傳統과 水準에 따라 差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世界的인 文化와 經濟의 交流가 擴大됨에 따라 保護가 強化되어가고 水準도 平準化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先發開途國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紛爭에서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 多者間 問題에 있어서나 兩國間問題에 있어서나 知的所有權에 관한 政策方向을 分明히 設定해야할 時點에 와 있다.

模倣을 위한 努力을 언제까지 또 어느정도 默認의 形式으로 間接保護할 것인가, 우리것의 模倣防止를 위한 努力으로 轉換할 것인가?

現在 우리 產業技術의 水準, 앞으로의 10年전후의 展望등이 고려 되어야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通商의 問題를 함께 고려 國益의 次元에서 巨視的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紙面관계로 여기서 상세히 檢討할수 없지만 結論만 이야기 한다면 模倣에서 創造에로의 것발을 걸고 知的所有權保護 強化에로의 隊列에 서야할 때가 오고 있다.

이로서 先進國과 知的所有權 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通商分野에서도 몇몇한 姿勢로 임하여야 할것이며 구차한 模倣의 必要性을 強調하지 않아도 된다.

一部 產業分野에서 苦痛이 따르겠지만 이를 克服하는 知惠와 低力이 있으므로 轉禍爲福의 契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保護對象과 程度

(1) 特許法에서의 先後進國間의 差異는 不特許事項의 有無(化學物質, 醫藥等), 強制實施制度의 有無와 強弱(美國의 경우 Clean Air Act에 依한 特許權의 強制實施制度가 있을뿐 特許法에서는 없음), 特許期間의 長短 및 侵害에 있어서 司法的救濟의 效率性等에 있다.

(2) 特許는 公開의 代價로 一定期間 獨占權을 賦與 保護하는 것인데 公開되지 않은 知的所有權은 어느정도 어떻게 保護할 것인가. 우리法에서도 民法, 商法, 刑法等에 의해 어느정도 保護가 可能하지만 이에대한 體系的 研究와 政策判斷이 必要하다.

예컨대 營業秘訣(Trade Secret: 化學 Formulas · 製造工程, 技術 Know-How, 生産品目, 價格情報, 去來先 등)

(3) 새로이 發展되는 分野 예컨대 Computer software, Mask Work (半導體칩設計) · 人工衛星 · 生命工學(Biotechnology) 등 새로운 科學技術分野에 대한 知的所有權으로서의 保護問題는 중요한 政策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知的所有權하면 著作權(Copy Right)과 工業所有權(Industrial Property Right)으로 兩分하는데, 최근 科學의 發達로 現行 特許法으로서는 理論上問題가 있는 科學的인 發見(scientific discoveries)에 대한 知的所有權인 科學所有權(scientific property)의 認定問題가 未來의 政策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WIPO設立 條約 第2條에서 知的所有權에는 科學的 發見에 대한 權利가 包含된다고 定義하고 있다. 現在 特許理論과 관계에서 흥미로운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4) 知的所有權 關聯分野

獨占使用을 前提로 하는 知的所有權은 市場經濟에 있어서 競爭의 活性化를 圖謀하는 公正去來法 내지 獨

寡占禁止法과 境界를 接하면서 衝突을 이룰 수 있다. 이같은 衝突은 知的所有權의 使用形態에서 나타날 수 있는바, 知的所有權의 保護強化와 함께 公正去來法과의 관계가 研究檢討되어 必要하다면 法的補完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우리의 對外依存的인 宿命的인 經濟構造, 技術開發의 當爲性, 先進國을 向한 國民意識鼓吹의 必要性등으로 知的所有權保護는 계속 發展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分野에 종사하는 분은 물론 學界에서도 關心을 提高하여 活潑한 研究討論이 所望스럽다. <☞>

本會主要實行業務

◎ 8 月의 메모 ◎

- | | | |
|-------------------------|-----------------------------|------------------------------|
| 1日 ◇特許公報 第1182號 發刊 | 發刊 | ◇意匠公報 第549號 發刊 |
| ◇公開特許公報 第202號發刊 | ◇特許公報 第1185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789號 發刊 |
| ◇第564回 이週의 優秀發明選 定報 道依賴 | ◇實用新案公報 第785號 發刊 | 21日 ◇工業所有權 大法院判例集 (86-7) 發刊 |
| 4日 ◇特許公報 第1183號 發刊 | 14日 ◇第566回 이週의 優秀發明選 定報 道依賴 | ◇商標公報 第308號 發刊 |
| 6日 ◇商標公報 第306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786號 發刊 | 22日 ◇아세아자동차 社內研修추원 |
| 7日 ◇特許公報 第1184號 發刊 | ◇意匠公報 第548號 發刊 | ◇第567回 이週의 優秀發明選 定報 道依賴 |
| 8日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06號 發刊 | 16日 ◇特許公報 第1186號 發刊 | 25日 ◇月刊 發明特許 8月號 發刊 |
| ◇第565回 이週의 優秀發明選 定報 道依賴 | ◇實用新案公報 第787號 發刊 | ◇特許公報 第1189號 發刊 |
| 9日 ◇第30回 發明教室 開催 | ◇公開特許公報 第205號 發刊 | 27日 ◇特許公報 第1190號 發刊 |
| ◇商標公報 第307號 發刊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09號 發刊 | 28日 ◇實用新案公報 第790號 發刊 |
| ◇KIPA通信 第6號 發刊 | 18日 ◇特許公報 第1187號 發刊 | ◇工業所有權 統計分析(2/4分 期)發刊 |
| 11日 ◇公開特許公報 第203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788號 發刊 | ◇부산(경남)지역 工業所有權 研修 講座(30日까지) |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07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206號 發刊 | 29日 ◇第568回 이週의 優秀發明選 定報 道依賴 |
| ◇意匠公報 第547號 發刊 | 19日 ◇光通信分野 세미나 및 간담 회 開催 | 30日 ◇特許公報 第1191號 發刊 |
| 13日 ◇公開特許公報 第204號 發刊 | 20日 ◇工業所有權 登錄目錄(86-1 7)發 | ◇商標公報 第309號 發刊<☞> |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08號 | ◇特許公報 第1188號 發刊 刊 | |